

## 서울중앙지방법원

### 판 결

사 건 2014가소625111 손해배상

- 원 고
1. 정  
부천시 소사구
  2. 유  
고양시 일산동구
  3. 명  
대구 달서구
  4. 양  
대구 북구
  5. 김  
광주 광산구
  6. 강  
광주 광산구
  7. 김  
서울 송파구
  8. 김  
서울 서초구

9. 안

서울 용산구

10. 김

김포시

11. 노

서울 마포구

12. 박

서울 광진구

13. 신

서울 은평구

14. 이

창원시 성산구

15. 전

포천시

16. 조

용인시 기흥구

17. 강

서울 구로구

18. 고

서울 동작구

19. 박

구리시

20. 서

광명시

21. 조

인천 서구

22. 최

정읍시

23. 최

서울 종로구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범석, 조형수

피 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

서울 중구 을지로 65 (에스케이 티-타워)

대표이사 하성민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

담당변호사 김범진, 백정화, 송평근, 장성원, 하준필

변 론 종 결 2015. 6. 11.

판 결 선 고 2015. 7. 2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### 청 구 취 지


피고는 원고 1. 내지 9.에게 각 200,000원, 원고 10. 내지 23.에게 각 1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# 이 유

- 피고가 약관에 따른 보상과 손해배상을 모두 이행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

판사

우광택

우 광 택 

※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# 정본입니다.

2015. 7. 6.

서울중앙지방법원

법원주사 임철우



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).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